

# 예산회계법 시행령 중 개정령

정부는 지난 5월 11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, 시행에 들어갔다.

이번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은 건설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과 입찰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정부계약제도 중 입찰시 입찰금액 외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총액단가입찰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이다.

현행	개정	비고
<p><b>제86조(공업의 현장설명과 입찰)</b>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의 성질상 현장 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다음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사에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일 이상</li> <li>2. 공사에정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이상</li> <li>3. 공사에정금액이 <u>10억원이상인 경우 20일이상</u></li> </ol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있어서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(설계도면·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사에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, 공사에정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.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공사에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이상</li> <li>4. 공사에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상</li> </ol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있어서 공사에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(설계도면·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에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열람하게 하는 외에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사에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.</p>	<p>공사에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응찰준비기간(현장설명을 실시하는 날부터 입찰일까지의 기간)을 종전의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함.</p>

현행	개정	비고
<p>④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목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외의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게 하되,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입찰시에 산출내역서에 총액으로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외의 공사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이는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의 제출시까지 그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⑥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 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⑦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④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(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중공사에 있어서는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부분을 말한다)에 있어서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산출내역서(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)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,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중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외의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되,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은 입찰시에 그 총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따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제4항전단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이는 공사와 제4항전단에 규정된 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⑦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과 입찰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입찰시 입찰금액외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총액단가입찰제의 대상을 종전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만으로 하였으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추가로 포함시켰.</p>
<p>제89조(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) ①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붙일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.</p>	<p>제89조(분리입찰) ①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규격과 가격을,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붙일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.</p> <p>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입찰에 붙일 수 있는 대상입찰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기술용역 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가격입찰만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기술입찰과 가격입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입찰의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기술용역 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.</p>
<p>제104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법 제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공사</p> <p>가. 제70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외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<u>직전의 시공자와</u>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나. 작업상의 혼란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	<p>가. 제70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외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<u>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</u> 계약을 하는 경우</p>	

현행	개정	비고
<p>다.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라.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마.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바. 당해 물품을 제조·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</p>	<p>다.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마.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</p>	
<p><b>제119조(입찰보증금)</b>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(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)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·총제조등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의 지급보증서</p> <p>2.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</p> <p>3.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</p> <p>4.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,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,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,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</p> <p>5.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 예치증서</p>	<p>1.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</p> <p>5.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</p>	<p>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급보증서의 범위에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포함시킴.</p>
<p><b>제121조(계약보증금)</b>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(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)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	

현행	개정	비고
<p>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·제조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·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3이상(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6이상)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·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.</p>	<p>③<b>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</b>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·제조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·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3이상(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6이상)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·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.</p>	
<p><b>제122조(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)</b>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1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<u>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</u>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.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②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1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<b>2차공사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</b>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.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<p><b>제162조(예산집행심의회)</b>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<u>소속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<b>소속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</b>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	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■